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2. 작성기준일 : 2025.02.20

3. 정정사유 :

- 자펀드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로 인한 관련 문구 반영
-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
-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
-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(2021.10.21. 시행)
-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

4. 효력발생일 : 2025.03.13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1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신탁업자가이드라인 제 34 조제 2 항 반영보완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	① 신탁업자는 ---요구해야 한다. <추가>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 3 영업일</u> 이내에 --공시하여야 한다.	① 신탁업자는 --요구해야 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3 영업일 이내에 - 공시하여야 한다.
제 23 조 (판매가격)	자본시장법 개정사항	① 수익증권의 -- <u>제 3 영업일</u> 에--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 1 항의-- <u>제 4 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① 수익증권의 -- 3 영업일 에--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② 제 1 항의-- 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 25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자펀드 환매주기 변경 관련 문구삭제 및 환매수수료 삭제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<u>날을 기준으로</u> 아래 각 호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--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1. 매월 1일부터 매월 15 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 전영업일)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15 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. 단, 매월 15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 2. 매월 16 일부터 매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 전영업일)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. 단,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 일부터 익월 15 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 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	① 수익증권의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<u>날부터 14 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15 영업일)에</u>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--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<삭제>

		<p>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1. 매월 1일부터 매월 15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 전영업일)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15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2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. 단, 매월 15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2. 매월 16일부터 당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 전영업일)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20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. 단, 매월 말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</p>	<p>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자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0 영업일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21 영업일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</p> <p><삭제></p>
제 26 조 (환매연기)	자펀드 환매 주기 변경 관련 문구삭제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p>⑦ 집합투자업자는 --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-- 이 일정한 날의 제 18 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 18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⑦ 집합투자업자는 --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 또는 -- 이 일정한 날의 18 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<삭제> 19 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
집합투자업자 주소지	주소지 이전	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	집합투자업자 :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

<변경등록신청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4. 집합투자업자 가. 회사의 개요	주소지변경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4, 19층 (우 07325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, 16층 (우 07321)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.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나. 특수위험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—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, 재간접 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제 1 영업일 경과 후에 ---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나. 특수위험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—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, 재간접 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이 1 영업일 경과 후에 --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	환매수수료 문구 삭제	나. 특수위험 환매수수료 관련 위험	나. 특수위험 <삭제>

		이 투자신탁의 특정 수익자 환매에 따라 피투자펀드를 매도할 경우에 피투자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되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, 이익금이 아닌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.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환매 시 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,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	
	환매수수료 문구 삭제	다. 기타 투자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---노출 됩니다. <u>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.</u>	다. 기타 투자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--- 노출 됩니다. <삭제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<u>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u> (나) <u>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로부터 제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u>	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<u>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u> ② <u>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: 납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u>
	자펀드 환매주기 변경관련 문구 삭제	나. 환매 (1) <u>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,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.</u>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<u>매월 1일부터 매월 15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 전영업일)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15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(단, 매월 15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.)</u> ② <u>매월 16일부터 매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, 그 전영업일)까지 환매 청구 시: 당월 말일(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)로부터 제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(단, 매월 말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.)</u>	나. 환매 (1) <u>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자투자신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해산, 허가취소, 업무정지 등의 사유(이하"해산 등")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자투자신탁의 실질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u> (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<u>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</u> ② <u>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1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</u>
	환매수수료 문구 삭제	(3)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으로써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	(3)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으로써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		<p>다만,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타임폴리오 워드타임증권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은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, 이는 계속 투자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. 한편,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펀드)에 귀속됩니다.</p> <p>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,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.</p> <p>① 6개월 미만 환매 시: 환매금액의 2.00%</p> <p>②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: 해당사항 없음</p> <p>※ 판매회사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에 정한바에 따라 목적식 저축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삭제></p>
	<p>자펀드 환매주기 변경관련 문구 삭제</p>	<p>(6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① 수익자 -- 이 일정한 날의 제 18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 18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	<p>(6)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① 수익자 -- 이 일정한 날의 18영업일 전일(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,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19영업일 전일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소득세법 제 57 조의 2 및 법인세법 제 57 조의 2 개정 사항 반영</p>	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·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---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* *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 /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) 단, 환급비율 > 1 이면 1, 환급비율 <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--처리하고 있습니다.</p>	<p>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·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---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)</p>
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	
<p>1. 재무정보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			

<p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)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</p>	<p>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제 2 항 반영보완</p>	<p>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을 ---- 요구하여야 합니다. <추가></p>	<p>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을 ---- 요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	
<p>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</p>	<p>환매수수료 문구 삭제</p>	<p>- 집합투자업자가 ----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“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”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.</p>	<p>- 집합투자업자가 ----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